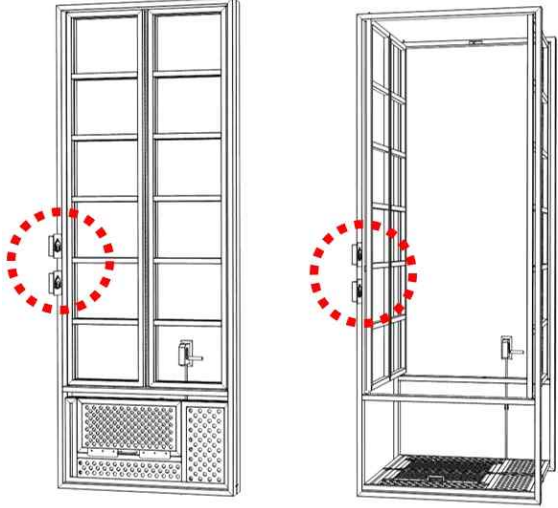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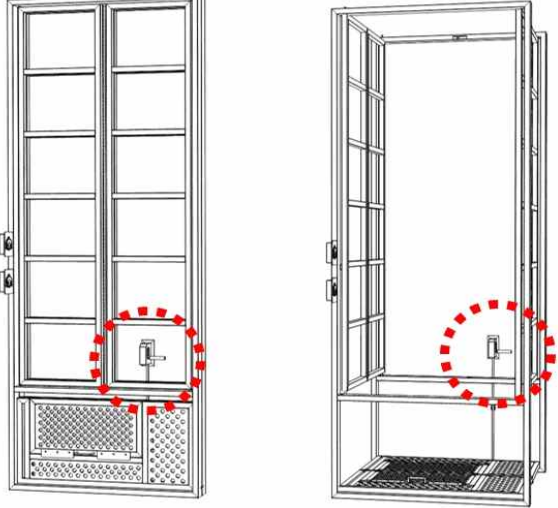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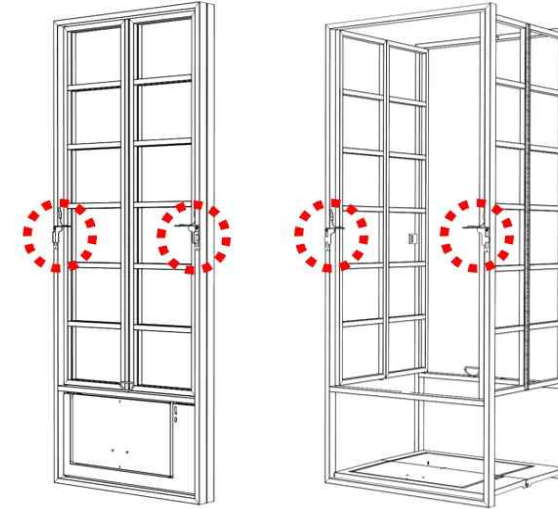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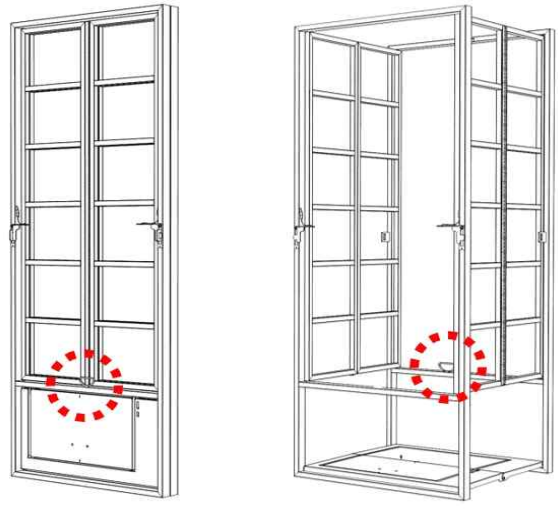


[별지 제1호서식]

☐ 인정 아파트 대피시설 ☒ 변경 신청서 ☐ 연장				
신청자	상호 또는 명칭	(주)에스투아이 엔지니어링	사업자 등록번호	435-88-00543
	성명(대표자)	김 주 미	연락처	031)712-9782
	공장 또는 공사현장 주소	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농공길 41	연락처	031)712-9782
제품 의 개요	상품명	화재 피난형계단 / 화재 피난구		
	대피시설의 형식	탈출형 대피시설		
	사용부위 (사용현장)	외피(벽, 창, 커튼월) 설치		
변경 내용	1. 설치현장 상황에 따라 작동레버 유동적 변경 2. 제작 재질 추가 (기존 아연각판 → 아연각판 外 스테인레스 추가) 3. 공장소재지 변경			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아파트 대피시설 변경을 신청합니다. 2023년 9월 13일 신청자 김 주 미 (서명 또는 날인) 국토교통부장관 귀하				
구비서류 : 별표 2의 서류				

1. 설치현장 상황에 따라 작동레버 유동적 변경 (기존방식에 새로운 방식 추가)

- 초고층 건물이나 해안가 등 풍압이 높아 작동레버를 작동하기 위한 힘이 더 소요되는 경우, 외단열 같은 돌출구조가 있는 건물, 작동레버 와이어의 연결루트에 변형이 필요한 경우 등 설치현장의 상황에 따라 작동레버의 구조방식과 그 위치를 구조적으로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

1) 작동레버 변경전	
수동개방장치	강제개방장치
	
2) 작동레버 변경후	
수동개방장치	강제개방장치
	

2. 제작 재질 추가 (기존 재질에 새로운 재질 추가)

- 기존 아연각판을 사용하여 제작하던 것을 현재 동급 이상의 고내식성 재질인 스테인레스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재질을 추가함
- 해안가 등 부식이 우려되는 지역의 현장이거나 발주처에서 고내식성 재질을 요청하는 경우 스테인레스 재질을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함

3. 공장소재지 변경

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8호의2서식] <개정 2012.10.5>

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(www.factoryon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공장등록증명(신청)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회사명 주식회사 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	전화번호 031-712-9782		
	대표자 성명 김주미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 131111-0467976		
	대표자 주소(법인 소재지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1, 683호 (구미동, 분당포스빌오피스텔)			
등록 내용	공장 소재지		지목	보유구분
	도로명 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로 277		공장용지	자가 []
	지번 :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790-1			임대 [V]
	공장 등록일 2023-09-12	사업 시작일 2023-11-01	종업원 수 남 : 2 여 : 2	
공장의 업종(분류번호)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외 1종 (25112, 25119)				
공장 부지 면적 165 m ²		제조시설 면적 165 m ²	부대시설 면적 0 m ²	
등록 조건		(유효기간 : 2023-09-12 ~ 2025-08-01)		

등록변경 · 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(변경 날짜 및 내용) 공장관리번호 : 411352023057449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.

2023년 09월 12일

신청인 김주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원
------	----	-----	---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처리기관	→	등록 여부 확인 처리기관	→	결재 처리기관	→	공장등록 증명서발급 처리기관	→	통보 처리기관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· 제2항 ·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.

2023년 09월 12일

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

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김주미 / 09월 12일 16:41

